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23. 4. 27.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나. 제1조 ~ 제2조: 상위법령 근거 및 군수의 책무 명문화
- 다. 제3조 ~ 제5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명시
- 라. 제6조 ~ 제7조: 보조금의 정산 및 지원제한 사유 명시
- 마. 제8조 ~ 제9조: 포상 및 지원절차의 준용 조례 명시
- 바. 별지 제1호 ~ 제5호서식: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서식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평창경찰서와 합의되었음

※ 경찰서의 책임권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전반

라. 기 타

1) 입법예고(23.08.09. ~ 08.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고기간 단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3801(2023.08.16.)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기획실-3801(2023.08.16.)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 가족복지과-6516(2023.08.18.)호 및 행정과-5271(2023.08.20.)호

- 반영사항: 별지 제4호서식(방법일지) 순찰자 기록 부분 '성별' 추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각 읍·면자율방범대 및 평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각 읍·면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각 읍·면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법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평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평창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평창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법대 등은 반기별 정산서(별지 2호서식)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등과 모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년도 (상/하)반기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1. 사업명 :

2.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조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20○○년도 (상/하)반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총무	대장
제000호	결제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 명 :○ 일 자 : 202○. 00. 00.(0요일)○ 채 주 :○ 금 액 : 원○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p>※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p>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조장	방법대장

○○자율방법대·연합대·연합회 방법일지

20○○년 월

순찰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 고
		성명	성별	서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20○○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관계법령 발취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27호, 2022. 4. 26.]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각 지원금의 예산 반영

나. 추계 결과

내역	산출기초(2023년 기준)	예산액(천원)	편성목
합계		220,000	
일반지원	운영비 지원 -야 식 비 4,000원*4인*20일*10개대*12월 -연료비 95,000원*10개대*12월 -전기료 21,500원*10개대*12월 -차량유지비 380,000원*10개대*12월	98,000	301-06
	근무복 지원 70,000원*350벌	25,000	
행사지원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지원	15,000	301-11
	직무경진대회 지원	12,000	307-04
자본지원	차량 지원 35,000,000원*2개대	70,000	402-01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군비(2023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 영 배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20,000	220,000	225,000	225,000	230,000	1,120,000
일반지원		123,000	123,000	125,000	125,000	127,000	623,000
행사지원		27,000	27,000	28,000	28,000	29,000	139,000
자본(차량)지원		70,000	70,000	72,000	72,000	74,000	358,000
재원 조달		220,000	220,000	225,000	225,000	230,000	1,12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0,000	220,000	225,000	225,000	230,000	1,120,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220,000	220,000	225,000	225,000	230,000	1,12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